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- 가. 성 명: 서 영 우
- 나. 생 년 월 일: 1975.12.25.
- 다. 소 속: 해당없음

2. 징계내용

- 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6월
- 나. 효력발생일: '22.6.21. ~ 12.20.
- 다. 사 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을 잘못 판단하고, 개별
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며, 비교 가능
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
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
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2년 6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